1-22	「화학제품안전법」 제36조 위반에 관한 벌칙 조항 신설	기후부장관

□ 권고 내용

○ 국회의장과 기후부장관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6조(**새로운 위해성 보고 및 조치권고**)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, 법 위반에 관한 **벌칙조항을 신설**하기 바랍니다.

□ 이행 현황

○ 정보 미보고로 인한 피해 경중의 고려 없이 **단순 미보고 행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벌칙 처분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(과잉 금지의 원칙)에 위배될 소지**

※「제품안전기본법」상 중대사고 보고위반 시 과태료(3천만원 이하) 처분

▲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의2(사업자의 보고의무), 제27조(과태료) 사업자는 시중 유통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중대사고(사망·화재·폭발사고, 전치 4주 이상 치료 등)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위반시 과태료(3천만원 이하) 처분

○ 타법에서도 유사한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일반적임

- 아울러, **현재「화학제품안전법」**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위해성 등에 관한 **보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**는 **비교적 높은 수준**의 부과 처분으로 벌칙조항 신설은 신중한 접근 필요

법률명	위반사항	과태료	비고
「화학제품안전법」	새로운 위해성 등의 보고	1천만원 이하 과태료	법 제60조제1항제7호
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	이상사례의 보고	100만원 이하 과태료	법 제47조제2항
「식품위생법」	이물발견 신고 접수 후 미보고	1천만원 이하 과태료	법 제101조제1항제5호의2
	이물발견 신고 접수 후 거짓보고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	법 제98조제2호
「약사법」	부작용 등의 보고	100만원 이하 과태료	법 제98조제1항제7호의8
「의료기기법」	부작용 관리 의무	500만원 이하 벌금	법 제54조 제1호
	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	100만원 이하 과태료	법 제56조제1항제2호의3
	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	100만원 이하 과태료	법 제56조제1항제3호

□ 향후 계획

○ 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